



제1699호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 | | | |
|-----|---------------|---|----------------|
| ○ 공 | 고 제 1 5 6 8 호 |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교 통 행 정 과 2 |
| ○ 공 | 고 제 1 5 6 9 호 |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교 통 행 정 과 4 |
| ○ 공 | 고 제 1 5 7 3 호 |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총 무 과 17 |
| ○ 공 | 고 제 1 5 8 4 호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38 |
| ○ 공 | 고 제 1 5 8 5 호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자 동 차 관 리 과 41 |
| ○ 공 | 고 제 1 5 8 7 호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생 활 경 제 과 43 |
| ○ 공 | 고 제 1 5 8 9 호 | 남동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 세 무 과 56 |

고 시

- | | | | |
|-----|-----------|-----------------|--------------|
| ○ 고 | 시 제 8 7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토 지 정 보 과 61 |
|-----|-----------|-----------------|--------------|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568호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거 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진인수 통보하였으나 불응하고 있기에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기관(부서)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8. 22. ~ 2022. 9. 5.(15일간)
2. 공고대상 : 41구9812, 73노3157, 52누2803, 02루8212, 08오2437, 46보7212 (붙임 참조)
3. 보관장소 :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032) 453-290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4.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남동구 교통행정과 (☎032) 453-2909)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 대상

연번	차량번호	차명	연식	위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주소	보관장소
1	41구9812	로체	2007	도림동 693 부근	김*룡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 ***호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032-453-2903~4)
2	73노3157	스타렉스	1998	남촌동 신원기술 부근	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만수동)	
3	52누2803	투스카니	2002	논현동 동산마을아파트 부근	A*****N M**K A*****Y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 ***동 ***호	
4	02루8212	SM5	2005	간석동 해돋이빌라 부근	THAI **** VU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 ***동 ***호	
5	08오2437	원스톱	2007	구월동 더누리자타운 부근	석***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빌딩 *층	
6	46보7212	체어맨	2004	간석동 신세계아파트 부근	김*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길 **-* , ***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569호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22.

남동구청장

가. 사 업 명 :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나. 시 행 청 : 남동구청

다. 설치장소 ※ 상세위치도 [붙임]

연 번	위 치	주 소	설치대수
1	상인천초등학교	간석동 938-1	1
2	간석초등학교	구월동 6-18	1
3	신월초등학교	구월동 614-2	1
4	조동초등학교	만수동 391	1
5	남동초등학교	만수동 1067	1
6	장도초등학교	논현동 600-10	1
7	인천한누리학교	논현동 710-1	1
8	문화예술회관 인근	구월동 1347-21	1
9	만수서로 83번길	만수동 5-92	1
10	앵고개로 굴다리	고잔동 295-3	1

라. 예고기간 : 2022. 8. 22.(월) ~ 2022. 9. 12.(월) (공고일로부터 22일)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공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453-2899)

- 팩스의 경우 전송 직후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 바.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 사. 제출기한 : 2022년 9월 12일 (월)
- 아. 문의사항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453-289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견제출서

행정예고명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신규 설치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1. 간석어울림마을아파트 103동 앞 (간석동 938-1)

■ 위치도면



■ 현장사진



CCTV 설치

위치도

2. 간석초교 낙원제일교회 사거리 (구월동 6-18)

■ 위치도면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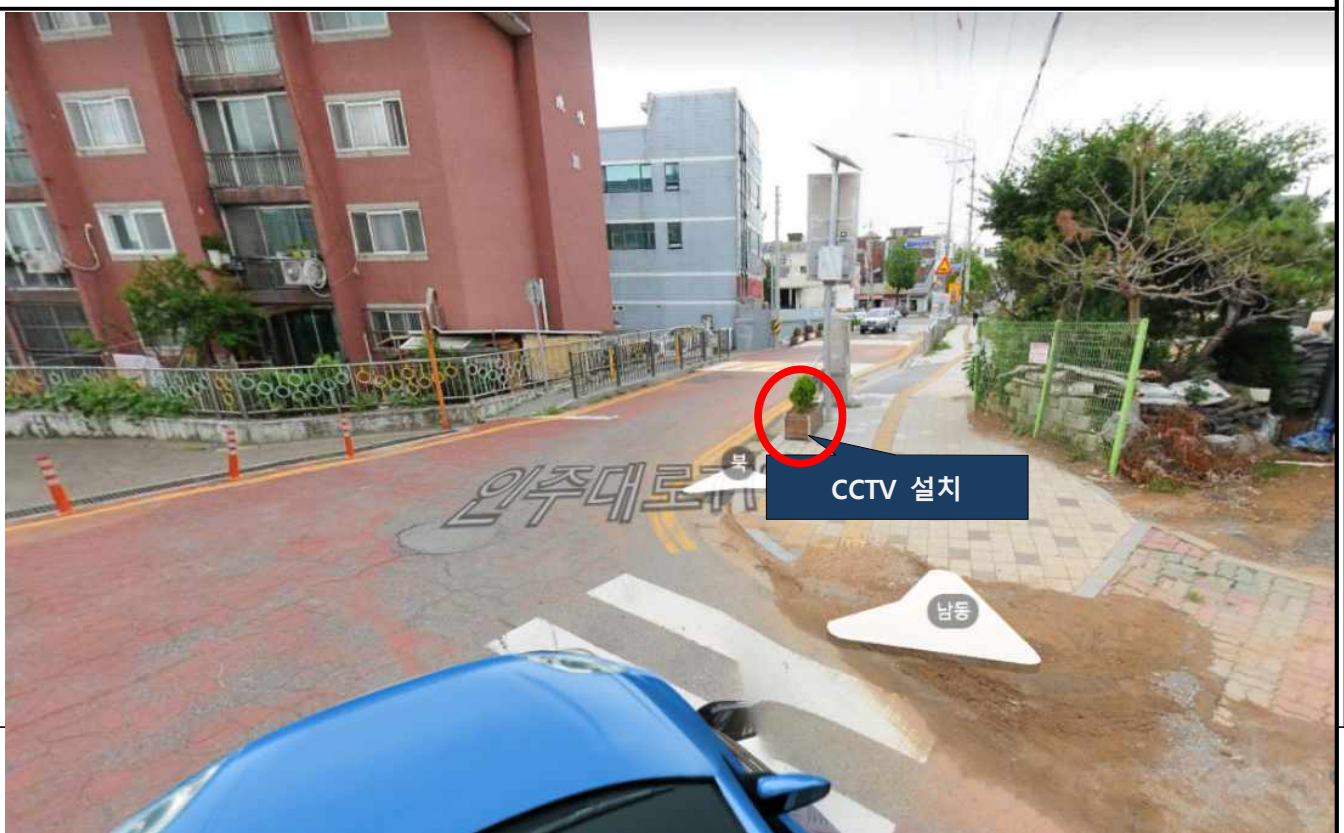
위치도

3. 신월초등학교 (구월동 1327)

■ 위치도면



■ 현장사진



위치도

4. 조동초교 정문 삼거리 (만수동 391)

■ 위치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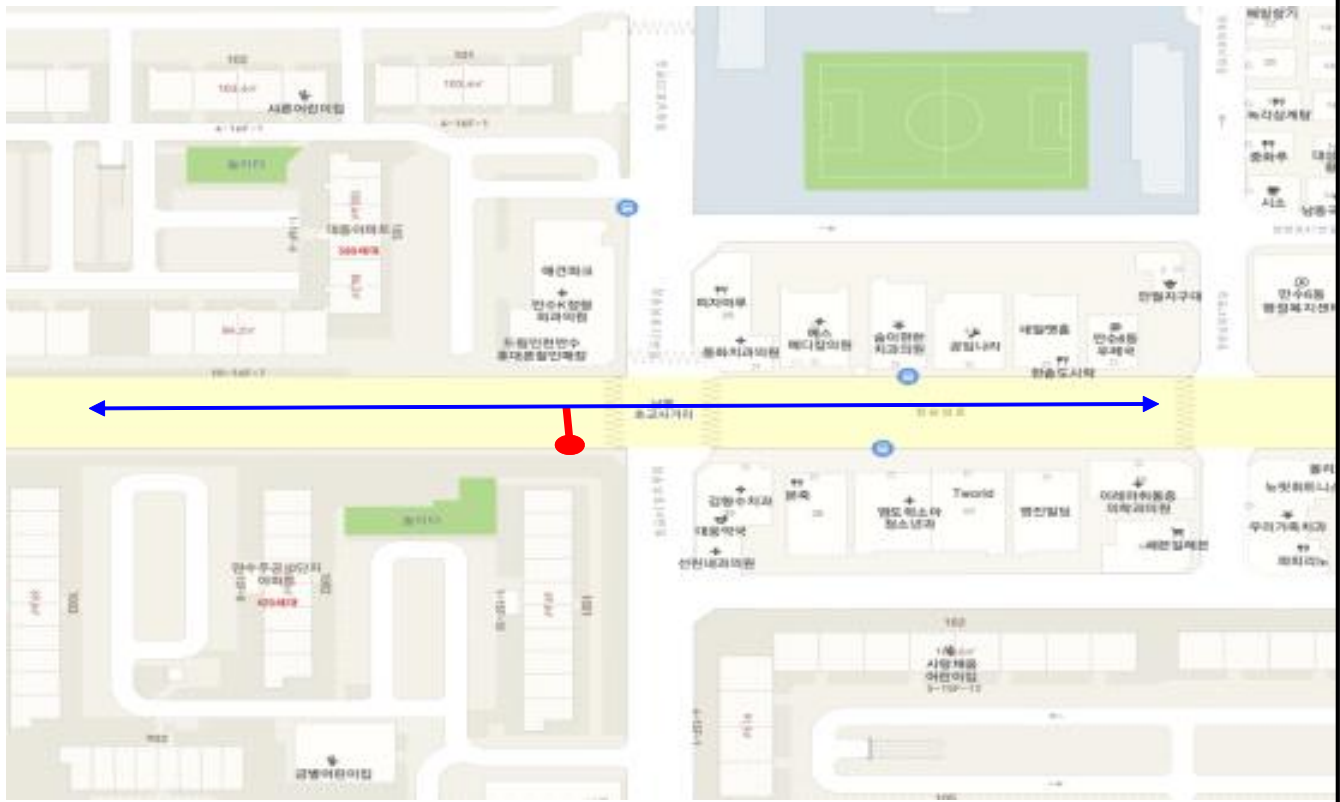
■ 현장사진



위치도

5. 남동초교사거리 장승남로 (만수동 1067)

■ 위치도면



■ 현장사진



위치도

6. 휴먼시아13단지 앞 청능대로 (논현동 600-10)

■ 위치도면



■ 현장사진



위치도

7. 인천남동우체국 뒷편 삼거리 (논현동 710-1)

■ 위치도면



■ 현장사진



위치도

8. 문화예술회관 인근 (구월동 1347-21)

■ 위치도면



■ 현장사진



위치도

9. 만수서로83번길 (만수동 5-92)

■ 위치도면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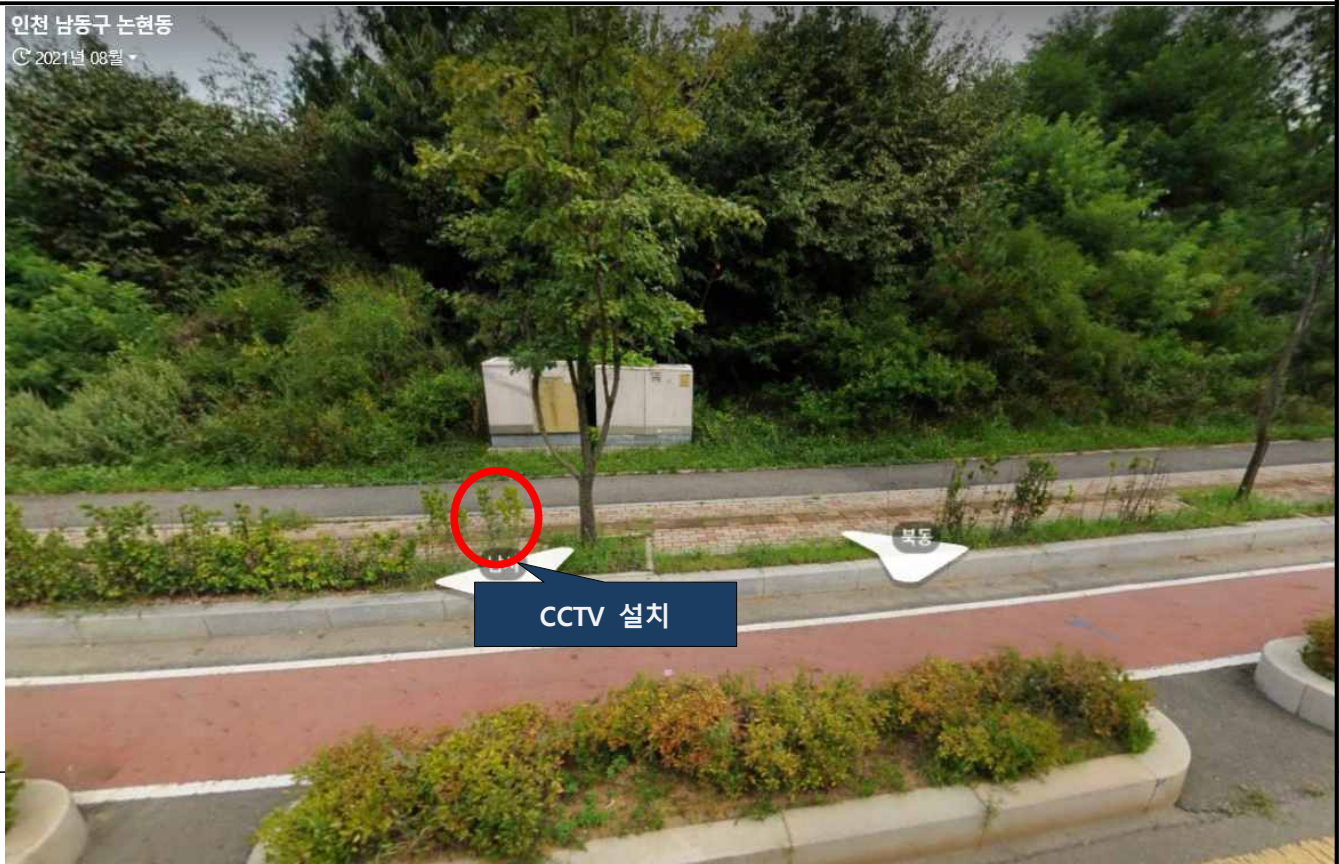
위치도

10. 앵고개로 굴다리 앞(고잔동 295-3)

■ 위치도면



■ 현장사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573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남동구 주민자치회 운영 중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 기준일 등 명확화 및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 확대 : 안 제7조
- 위원의 선정 비율 보완책 마련 등 : 안 제8조
- 감사 결과 보고 대상 추가 : 안 제11조
- 제13조 및 제14조의 중복 규정 삭제 및 명확화 : 안 제13조
- 자치계획의 유효기간 신설 : 안 제14조
-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개최 근거 명확화 : 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연임 횟수 축소 등 : 안 제18조
-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규정 추가 및 절차 명확화 : 안 제20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 안 제20조의2
- 자원봉사자 모집 주체 확대 및 실비 재원 확대 등 : 안 제30조
- 강사 수당 재원 확대 : 안 제31조
-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 신설 :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02,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남동구 주민자치 정책 추진 과정 중 미비점 및 주민자치회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 기준일 등 명확화 및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 확대 : 안 제7조
- 위원의 선정 비율 보완책 마련 등 : 안 제8조
- 감사 결과 보고 대상 추가 : 안 제11조
- 제13조 및 제14조의 중복 규정 삭제 및 명확화 : 안 제13조
- 자치계획의 유효기간 신설 : 안 제14조
-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개최 근거 명확화 : 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연임 횟수 축소 등 : 안 제18조
-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규정 추가 및 절차 명확화 : 안 제20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 안 제20조의2
- 자원봉사자 모집 주체 확대 및 실비 재원 확대 등 : 안 제30조
- 강사 수당 재원 확대 : 안 제31조
-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 신설 : 안 제3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
(행정안전부, 2020. 4. 2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를 “신청일 또는 추천일 기준 만 18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 속한 사람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개모집”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학교·기관·단체·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다만, 선정된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40퍼센트에 미달될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정원 범위 내 충원이 가능하다.

제8조제3항 중 “10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과 같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를 “투표방법과 의결방법은 주민자치회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음년도”를 “제14조에 따른 다음년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제1항 중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세”를 “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한 인원이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2년동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가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을 “제7조제1항 각 호의”로, “않는”을 “않거

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를 “주민자치회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의 분과위원회 및 제23조의 주민자치협의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중 “동장”을 “동장 또는 자치회장”으로,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을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예산”을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로 한다.

제3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생략)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 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제1항과 같다.

<단서 신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해당 학교·기관·단체·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내) 다만, 선정된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40퍼센트에 미달될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정원 범위 내 충원이 가능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5명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1. · 2. (생 략)

⑦ ~ ⑩ (생 략)

제11조(감사) ① (생 략)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생 략)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 2. (생 략)

3.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

는 위촉하지 않는다.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
-----.

제13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투표방
법과 의결방법은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에 따른 다음년도 -----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운영) ① -----

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촉을 포함하여 네 번 연속 위촉된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 설>

----- 다
----- 음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 -----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
----- 두 -----
----- .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 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한 인원이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2년동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신 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 6. (생략)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가 선정하려는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

-----.

-----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
----- 않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

2. ~ 6.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자치회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20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
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
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
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
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
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
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제30조(자원봉사자) ① 동장은 자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강사) ①·② (생략)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⑧ (생략)

<신설>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의 분과위원회 및 제23조의 주민자치협의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자원봉사자) ① 동장 또는 자치회장-----
모집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

제31조(강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

제3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

제정 : 자치제도과 - 1176(2013.6.20.)

개정 : 자치제도과 - 2369(2014.7.24.)

개정 : 자치제도과 - 2153(2015.6.17.)

개정 : 자치제도과 - 374(2017. 2. 1.)

개정 : 자치분권과 - 3169(2018. 8. 30.)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2666(2019. 8. 28.)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1222(2020. 4.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 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면·동의 경우)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584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남동구청장

1. 공 고 대 상 : 24모85** 외 14건 (첨부파일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2. 8. 24. ~ 9. 8.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2년 8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24모8503	김*윤	2022.08.16.	폐문부재	방향지시등 상시 점등	216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2	인천남동파6892	최*현	2022.08.16.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6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아파트)
3	68도7461	김*진	2022.08.16.	폐문부재	안개등 미인증 LED 설치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타워)
4	16나4668	이*주	2022.08.16.	폐문부재	등화장치 임의설치(점멸동작장치)	215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구월동, 구*****이)
5	인천계양사9624	나*훈	2022.08.16.	폐문부재	미인증 안개등 설치	21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빌라)
6	인천남동파3525	박*철	2022.08.16.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나동 ***호(구월동, **아파트)
7	31수4763	이*근	2022.08.16.	폐문부재	등화장치 임의설치(점멸동작장치)	21538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층(만수동)
8	서울성동마0644	김*민	2022.08.16.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9	153모563 1	조*석	2022.08.16.	폐문부재	후등화 개조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호(구월동, *****빌)
10	인천남동파7659	방*열	2022.08.16.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구월동, **빌라)
11	11어1219	강*식	2022.08.16.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스티커)	21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동 ***호(장수동, 장****)
12	인천미추홀파8935	이*민	2022.08.16.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빌라)
13	인천연수다3177	이*우	2022.08.16.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불법가이드)	215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호(구월동)

제1699호

남동구 구보

2022. 8. 25. 목요일

14	인천남동 타4517	한*엽	2022.08.12.	폐문 부재	봉인탈락	215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호(간석동)
15	10모5588	이*규	2022.08.16.	폐문 부재	번호판 미부착 운행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호(간석동)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58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24일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인천서타84** 외 5건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22. 8. 24. ~ 2022. 9. 8. 까지

4. 공고내용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내용	반송일	과태료
1	인천서타8444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층 **호(구월동, **프라자)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8.18	30,900
2	53다5024	김*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간석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8.18	30,900
3	40마8588	형*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 ***호(만수동, *****주택)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8.17	30,900
4	13구2874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도림동, *****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8.18	30,900
5	인천미추홀파8935	이*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8.18	30,900
6	34우6989	신*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구월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8.18	30,9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587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1호(2022. 2. 1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1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8. 25. ~ 2022. 9. 8.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2662)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생활경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제5회수용재결신청사업열람공고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 지			지 장 물		간접보상비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	78.00	65,676,000	14	1,095,613,280	29	256,487,730	1,417,777,0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 032)453-2662, 김진동

사업시행자 조서(토 지)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Page 1 / 1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부	실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4	도	도	78㎡	강O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등)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 로888번길*****동*****호(만 수동,**아파트)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1필지			78.000	1인		0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2수용0079)

수 용 지 장 물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 류	주 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10 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김O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번길* ***동***호(마전동,****아파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B01호	지장물 벽돌조	39.09㎡	김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동***호(간석동,**빌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30 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김O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등)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번 길*****동***호(만수동,**아파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B0 2호	지장물 벽돌조	39.09㎡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동***호(간석동,**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30 2호	지장물	36.13㎡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광희동1가, **빌딩) (등)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광희동 1가,**빌딩)

			벽돌조			길**~**동***호(간석동,**빌라)	근저당권 자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B0 1호	지장물 벽돌조	39.09㎡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동***호(간석동,**빌라)		
8	"	224-605 삼화빌라B동창 고	지장물 판넬조, 판넬지붕	10.5㎡	"	"		
					소계(2)건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B0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박O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동****호(응봉동,*****)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0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호(간석동,**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20 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이O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미추홀구염전로*** 번안길**(도화동)	***** 금고 근저당권 자	광주광역시 동구 참판로 ** (등)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B0 2호	지장물	39.09㎡	이O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	**농업협 동조합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

			벽돌조			(등)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번 길*****호(간석동,***)	근저당권 자	(등)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20 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동***호(간석동,**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20 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동***호(간석동,**빌라)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림빌라30 2호	지장물 철근콘크리 트조	75.72㎡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 길**--****호(간석동,****빌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4건			13인		3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이주정착금 의 표 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B 02호	이주정착금	1식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3 02호	이주정착금	1식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B 01호	이주정착금	1식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01 호	이주정착금	1식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호(간석동,**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2 01호	이주정착금	1식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제1699호

남동구 구보

2022. 8. 25. 목요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2 02호	이주정착금	1식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빌빌 라302호	이주정착금	1식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호(간석동,****빌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7건			7인		0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주거이전비 의 표 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 B02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302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1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102호	주거이전비(세입자)	1식	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2호	주거이전비(세입자)	1식	박O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 01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빌 라)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302호	주거이전비(세입자)	1식	이O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201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2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 빌라302호	주거이전비(소유자)	1식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 빌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1호	주거이전비(세입자)	1식	황O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1건			11인			0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이사비 의 표 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주 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B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3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1호	이사비(소유자)	1식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102호	이사비(세입자)	1식	박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2호	이사비(세입자)	1식	박O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 01호	이사비(소유자)	1식	염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 빌라)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302호	이사비(세입자)	1식	이O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201호	이사비(소유자)	1식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 빌라3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 **빌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1호	이사비(세입자)	1식	황O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 ,**빌라)		
						- 이하여백 -		

의견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589호

남동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남동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남 동 구 청 장**1. 금고의수 : 1개의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4.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서류열람

- 기 간 : 2022. 9. 5.(월)~9. 8.(목)(※09:00~18:00 근무시간 중)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 1층) (☎ 032-453-2362)
- 열람서류 : 2020~2021년도 결산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등

※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2. 9. 19.(월) ~ 9. 20.(화) (※ 09:00~18:00 근무시간 중)
-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 1층)
- 제출부수 : 제안서 13부 (원본1, 사본12), 증빙서류 13부(원본1, 사본1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1부,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13부, 각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타 요청서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	
6. 기타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 [별표2] 참고

8. 심의·평가방법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불응 시에는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평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에 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새로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1금고 은행과 협조하여 수납세입금 집계 및 정산 지연, 구민의 세입금 납부불편 초래 등 관련

세입사무 처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2022년도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시 은행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법인인감 날인된 사용인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추가제출 서류(제출자료 검증 등 확인자료) 1부는 밀봉 제외

- 접수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남동구청 세무과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내용)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세무과로 문의 (☎ 032-453-2362)

[별표1]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4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9)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소계	19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나.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소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8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32 (남촌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32 (고잔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 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8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32 (남촌동)	2009. 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2.8. 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53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68-33 (남촌동)	2009. 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2.8. 1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568-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8-33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32 (고잔동)	2022.8.1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